



Web Contents



2021년 01월 22일 06시 05분

목차

목차	2
남녀차별	3
신고안내	3
다음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.	3
남녀차별(성희롱) 시정신청을 받습니다.	3
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.	3
신고처리절차	3

목포시 아동/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	여성폭력방지정보안내	남녀차별
가정폭력	성폭력	

신고안내

✔ 다음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.

- 남녀차별 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
- 남녀차별 사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한 사항
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

✔ 남녀차별(성희롱) 시정신청을 받습니다.

시정신청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, 팩스로 보내실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

- 방 문 :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(세종로 정부중앙청사 8층)
- 우 편 : (우)110-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
- 팩 스 : 02-3703-2589
- 인터넷 : 여성부 홈페이지 ⇒ 남녀차별신고센터 ⇒ 온라인시정신청 ⇒ 온라인시정신청

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.

- 전 화 : 전국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544-9995
- 인터넷 : 여성부 홈페이지 ⇒ 남녀차별신고센터 ⇒ 남녀차별상담

신고처리절차

1. 시정신청 : 피해사실(피해자본인) 발생 1년 이내
2. 조 사 : 90일 이내(필요시연장)
3. 합의권고조정
4. 남녀차별 여부결정 : 남녀차별개선 위원회 심의 의결
5. 시정조치권고, 법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: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,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6. 이의신청
7. 공표 소송지원

MokPo - Si ***Web Contents***

